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233호

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89호, 2017.10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25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본문 중 “동법 시행령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”으로, “제21조제2항에 의하여”를 “제21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	74.9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83.4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84.8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84.8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30.1원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	85.0원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81.5원

부 칙

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 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 행령 제21조제2항에 <u>의하여</u>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“요양 급여의 상대가치점수”의 아래 유형 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 다.	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 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<u>같은 법</u>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<u>따라</u>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“요양 급여의 상대가치점수”의 아래 유형 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 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형별 분류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수당 단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73.5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1.4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3.1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 병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2.3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25.5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2.4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79.3원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	<u>73.5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81.4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83.1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 병원	<u>82.3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25.5원</u>	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	<u>82.4원</u>	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79.3원</u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형별 분류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수당 단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74.9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3.4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4.8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 병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4.8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30.1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5.0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1.5원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	<u>74.9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83.4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84.8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 병원	<u>84.8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30.1원</u>	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	<u>85.0원</u>	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81.5원</u>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	<u>73.5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81.4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83.1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 병원	<u>82.3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25.5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	<u>82.4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79.3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	<u>74.9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83.4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84.8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 병원	<u>84.8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30.1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	<u>85.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81.5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